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m²	m²	m²	m²	m²	m²	m²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m³	m³			
입목벌채 (굴취)	벌채(굴취)구역면적	나무의 종류	본수	나무부피			
	m²		본	m³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